

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(치료) · 일시보호 기관 안내

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

1 관련근거

- 가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
- 나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
- 다.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

2 심리상담(치료)기관

- 가. 심리상담(치료) 및 조언기관 : 교육감이 지정한 215개 기관
 - 교육지원청 Wee센터, 가정형 Wee센터, 공공센터 기관, 병의원 및 병의원 부설상담센터, 상담전문기관 기관 등
- 나. 일시보호기관 : 교육감이 지정한 39개 기관
 - 교육지원청 Wee센터, 가정형 Wee센터, 기타 기관 등
 - ※ [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](#) > [통합자료실](#) > [복부청사 학생생활인권과 공지사항](#) 탑재
- 다. 치료 및 요양 기관
 - 「의료법」의 모든 의료기관,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, 약국 등
 - ※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
- 라. 치료(보호) 기간
 - 상담 및 치료 등 :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‘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
 - 일시보호 기간은 30일
 - 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의3제1항

3 심리상담(치료)기관 이용 절차

가. 치료기관 이용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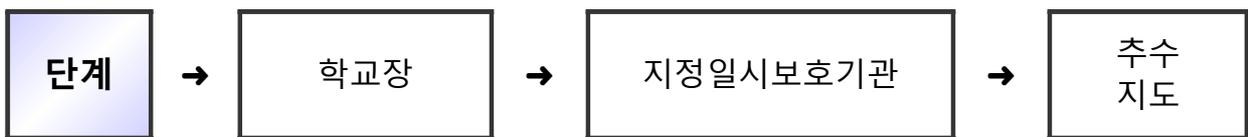
※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후 진행

※ 추수지도 : 학급 복귀 시 담임교사, 상담교사(상담사), 진로상담교사, 외부전문가 등 1:1 멘토링, 추수지도 모니터링

○ 단계별 심리상담(치료) 및 조언 절차



○ 일시보호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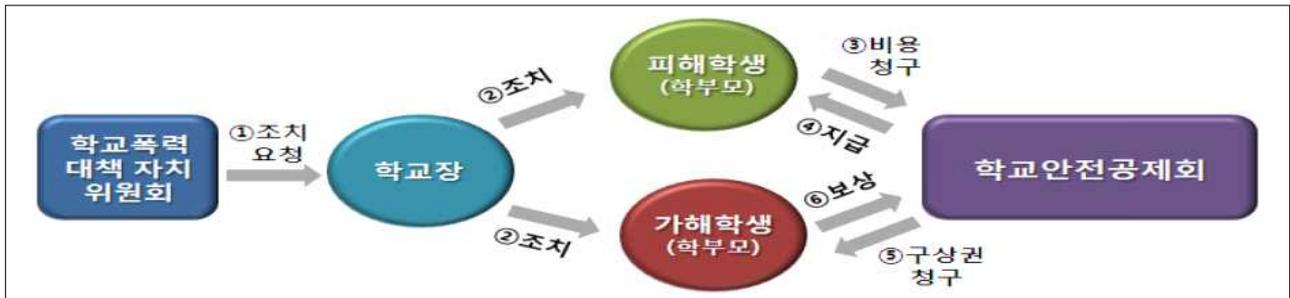
○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절차



4 선 치료비 지원- 후 구상권 행사 시스템

※ 선치료비지원-후구상권행사 관련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
(☎ 1588-5255)

가. 피해학생 '선 치료비지원 - 후 구상권 행사 시스템' 개요



-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·일시보호·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
-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

※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, 민법 제750조

- 다만,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(학부모)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, 일시보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

※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6항, 「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4항

나. 선 치료 지원의 범위

- 심리상담 및 조언
- 일시보호
-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4항

다. 보상 범위

○ 대상 학교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(자율학교 등)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
※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
○ 행위 장소 및 가해자

- 학교폭력을 “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”한 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, 학교 밖 청소년 등(퇴학생, 자퇴생, 학적미보유 미성년자 등)으로부터의 폭력도 해당
※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
○ 심리 상담(치료) 및 일시보호

-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심리 상담(치료) 및 조언, 일시 보호를 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
※ 심리 상담(치료) 및 조언, 일시보호 이외의 기타 치료비(약제비, 입원비 등)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각별히 유의할 것
※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

○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
- 「의료법」의 모든 의료기관,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, 약국 등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【별표】 ‘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’에 의거 지급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5항

5

‘선 치료지원’ 보상 절차

가. 보상 절차
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청구
-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장은 ‘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’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
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의3제2항

※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: <http://www.schoolsafe.or.kr>

○ 학교장은 ‘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’를 작성하며, 공제회에서는
청구된 내용과 학교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심사를
실시,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집행
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의3제3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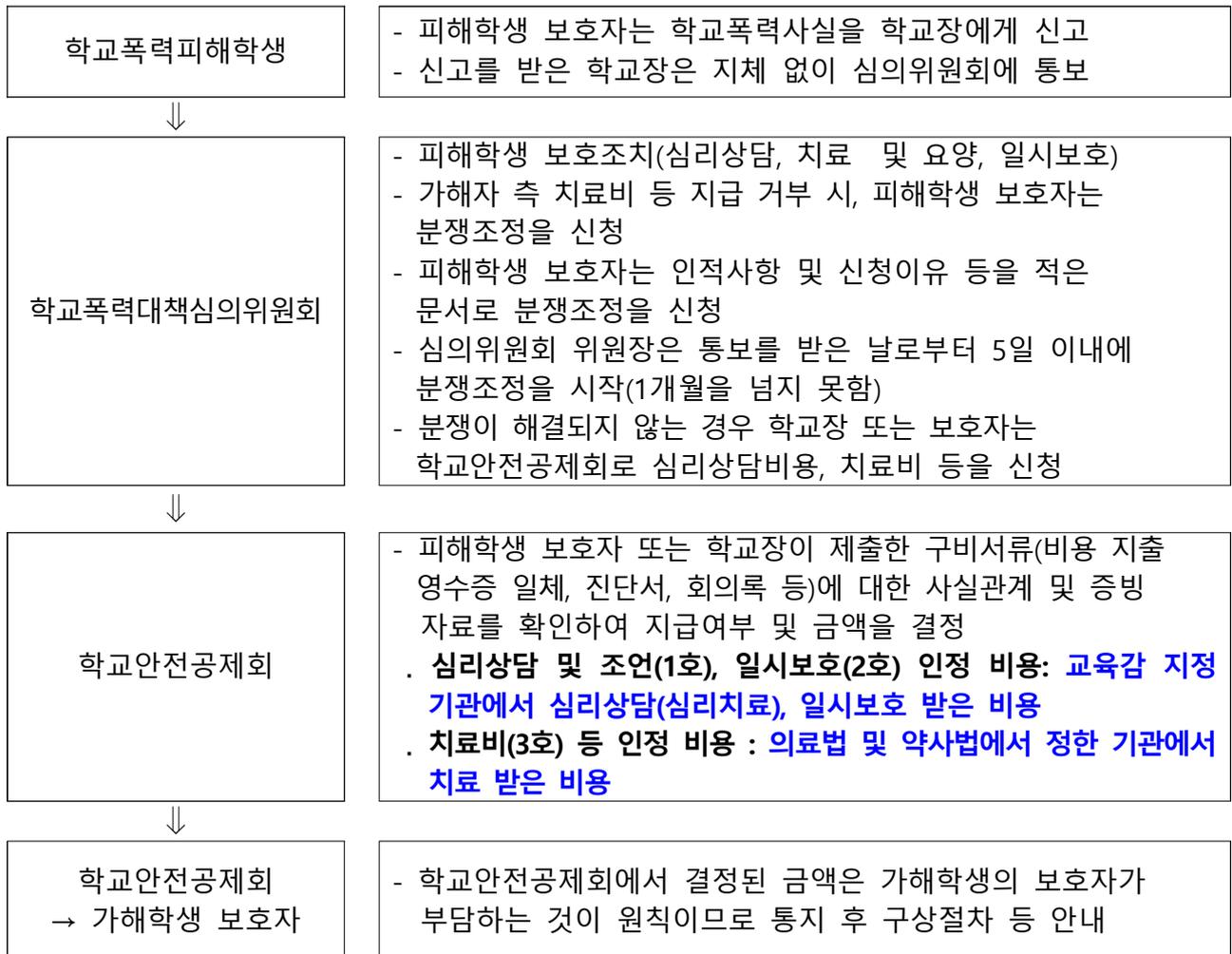
※ 「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」 작성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치료
조치 및 계획 란의 “조치사항”은 필히 작성

○ 결정된 내용은 지급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통지
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의3제4항

※ 학교에서 작성한 학교폭력사고통지서의 가해학생 주소로 통보(정확한 주소 기재 필요)

나. 처리절차 흐름도



↓	↓
학교안전공제회 → 치료비 청구인 (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등)	- 가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통지한 내용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인(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등)에게 지급
↓	↓
학교안전공제회 → 가해학생 보호자	-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최종 구상권 청구

다.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

○ 구비서류
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사본 1부
-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원본 1부
- 항목별 증빙자료 원본 각 1부

심리상담 및 조언에 따른 비용	1. 학교폭력관련 학교장 의뢰 확인서 2.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. 주민등록등본
일시보호에 따른 비용	1. 심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.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	1.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 진단서 2.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. 주민등록등본

- 제출방법: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☞ 주소 : [11759]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
 (금오동,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)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

라. 보상 처리 기간

-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
 - 다만,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연장은 가능
-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자에게 통지
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, 제3항

심리상담(치료) 및 조언(일시보호) 의뢰서

1. 학교

학교명		연락처	사무실:
담당자			핸드폰:

2. 학생정보

성명	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	보호자	자택 :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여		핸드폰:
				학생	핸드폰:
학년 반	학년 반	생년월일		년 월 일	
피해자 보호 조치	<i>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</i> <i>(1호) 심리상담 및 조언</i> <i>(2호) 일시보호</i> <i>(3호)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</i>				
개인의 특성	심리 정서적 측면				
	기타				
∴ 참고사항					
상기인을 (00교육지원청 Wee센터, 00기관)에 심리상담 및 조언(일시보호)을 의뢰합니다. 20 년 월 일 00학교장 (직인)					

첨부서류	아래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	-----------

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

1. 청구서는 공제가입자(학교장)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3.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.
4. 청구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.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도면·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급여종류	청구인 제출서류(각 1부)	비고
심리상담 및 조언	1.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.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. 주민등록등본	
일시보호	1.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.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	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	1.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.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. 주민등록등본	

처리절차

